

-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
-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월

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방법

정정신고 후 납부	기간	12월 1-15일
	방법	홈택스에서 직접 증부세액을 신고한 뒤 납부
	주의사항	과소신고 시 10-40% 가산세
이의신청	기간	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
	방법	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신청
	주의사항	미납 상태로 이의신청시 납부지연가산세 3% 부과 (100만원 이상 미납 시 매일 0.025% 가산)

화

연금저축과 IRP 비교

	연금저축	IRP
세액공제 한도	연 400만원(근로소득 1억 2000만원 초과/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300만원)	연 700만원
세액공제율	근로소득 연 5500만원 이하,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.5%,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초과는 13.2%	
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	제한 없음	70%
중도인출 가능 여부	자유로움. 단 납입금 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.5% 부과	특정 사유 없으면 일부인출 불가능, 전부 해지는 가능



부가가치세 ‘과·면세’ 및 ‘면세사업’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

구분	사업형태	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(○, ×)	
		여부	내용
법인 사업자	부가가치세 과세, 면세 구분 없음	○	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,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해야 함
개인 사업자	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 영위	×	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 가 없음
	부가가치세 과세·면세 사업 겸업	○	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 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→ '22.7.1. 이후 2억원 이상
	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영위	○	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 계산서 발급의무 → '22.7.1. 이후 2억원 이상



전자계산서 발급·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

구분	내용	발급자	수취자	
발급	사실과 다름	•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(일부)가 기재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	1%	-
	미발급	•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발급	2%	-
	지연 발급	•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도)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	1%	-
	허위등	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공급받지) 하지 않고 계 산서 발급(발급받음) 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(공급받고) 타인 명 의로 계산서를 발급(발급받음)	2%	2%
	종이 발급	•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	1% (16년 이후)	-
전송	지연 전송	•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 도)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	* 연도별· 사업자별로 다름	-
	미전송	•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(사업연 도)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		